

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

○ 부서명 : 복지정책과

○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

구분	조치사항				비고
	총건수	시정	개선	권고	
합 계	6	0	4	2	
조치완료	1	0	1	0	
조 치 중	5	0	3	2	
장기검토	0	0	0	0	
조치불가	0	0	0	0	

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

소관부서	처분구분	지 적 사 항	조치결과 및 추진계획	완료구분
복지 정책과	개 선	154. 법률홈닥터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통합 방안 모색 ○ 법률홈닥터 사업이 필요 사업임을 전제로, 타 부서에서 운영 중인 유사 법률자문 사업과의 결합 또는 연계를 통해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,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.	○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구미시에 배치되어 법률홈닥터 상시 운영 재개('25. 6. 26.) ○ 법률홈닥터 사업은 사회·경제적 취약 계층을 위한 법률복지서비스로, 필요 시 법률구조공단 등 전문기관 연계를 통해 구조·소송·권리구제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통합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함.	조치완료
	개 선	155. 계선각 선행 기념 및 존중 프로그램 발굴 ○ 계선각 선행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존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념 및 포상 프로그램을 발굴·운영하여, 지역사회 내 선행 문화 확산과 존중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여야 함.	○ 계선각 선행이 지속적으로 기억되고 존중될 수 있도록 구홀기부사회봉사 실천사례 발굴('25. 7. 4. 구미문화원, 문화예술과, 읍면동 공문 발송) ○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구미시사회공헌 센터와 연계하여 프로그램 추진을 검토 하겠음.	조치중

소관부서	처분구분	지 적 사 항	조치결과 및 추진계획	완료구분
복지 정책과	개 선	156. 5차 구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내 부적합 사업 개선 및 수혜자 의견 반영 ○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되기 부적절한 사업들이 일부 존재하는 바,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 및 개선이 필요함. ○ 또한 지역사회보장서비스 수혜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6차 지역사회 보장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기 바람.	○ 구미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은 「사회보장급여법」 제36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의 분야별 추진사업이 포함되어 있음. ※ 사회보장에는 복지, 보건의료, 고용, 교육, 주거, 문화, 환경 등의 7대 분야가 포함됨. ○ 제6기('27~'30) 지역사회보장계획은 5기 계획에 비해 시민 의견을 대폭 수렴(5기 400명→6기 1,000명)하여 지역주민욕구조사 진행 중이며,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보장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.	조치중
	권 고	157. 참전수당 연령 제한 완화 도 협의 추진 ○ 현재 구미시는 참전수당 지급에 별도 연령 제한이 없으나, 경상북도에서는 65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음. ○ 이에 연령 제한 완화를 위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더불어 경상북도와 협의를 통한 제도 개선 노력이 요구됨.	○ 경북도청 사회복지과 방문하여 조례 개정 요청함.('25. 7. 23.) ○ 국가보훈부 방문하여 보상정책과에 정책 반영에 대해 요청함. ('25. 7. 28.) ○ 유공자 예우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위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겠음.	조치중

소관부서	처분구분	지 적 사 항	조치결과 및 추진계획	완료구분
복지 정책과	권 고	158.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 연계체계 구축 및 성과 홍보 활성화 -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수행하는 다양한 사업과 구미시의 관련 정책 및 사업 간 연계성을 체계적으로 분석·정리하여, 상호 협력과 시너지 창출을 위한 통합 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됨. - 아울러 협의체 활동과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·실행하여 주민의 이해도 제고 및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음.	- 지역사회보장협의체(대표협의체, 실무협의체, 실무분과, 읍면동협의체)와 구미시 복지정책(사업)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점을 도출하는 등 민관 협력과 소통에 노력하겠음. - 시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홈페이지, ‘성과보고회’(25. 12월) 개최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, 각 협의체별 추진사업과 회의록을 공개하여 주민들의 참여와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.	조치중
	개 선	159. 사회복지사 유급병가 지원 제도 운영 철저 -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의 일환인 유급병가 지원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히 시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함. - 집행기관은 관련 규정 점검 및 실태 관리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강화 필요함.	- 각 시설 소관부서 및 사회복지협의회, 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유급병가 지원 제도 활용 안내함. (25. 1월, 8월) 25년 5월~10월까지 진행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실태조사를 통해 유급병가 제도 이용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음.	조치중